

2020년도 제30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1. 19.(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심장섭위원, 위정현 위원, 김연희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295호)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646건(안건번호 제2020-154190호~15543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54190호~1154197호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한 화 전체분량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54197호는 미국영화의 영문자막과 우리말 자막 파일(smi)을 제공 중인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54199호~154205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본만화를 각각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605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30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9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13쪽의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7쪽에 있는 OSP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해당 OSP'를 '심의대상 OSP'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임.
-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해당 부분을 수정한 후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위원,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TV조선', 'tvN', 'OCN', '롯데엔터테인먼트', 'CJENM', '일본 MBS', '일본 TV도쿄', '일본 후지TV', '일본 도쿄 MX', '미국 Netflix', '미국AMC', '미국 HBO', '미국 showtime', '미국 FOX',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월트디지니컴퍼니코리아',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주)쇼박스', '오피스픽처스', '콘텐츠웨이브'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64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0-154190호~155432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54190호~154197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 ‘★★★★’, ‘★★★★ ★★★★★ ★★★★★’, ‘★★★★★’, ‘★★★★ ★★’, ‘★★★★★★ ★★★★★’, ‘★★★★★’ 각각 한 화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 중인 사안임. 총 26개의 게시물임.
 (제2020-154190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 10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인 21분 27초를 제공하고 있음.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입니다”라는 팝업창이 등장함.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임. 심의대상 게시물 이외 다수의 불법복제 게시물이 존재함.
 (제2020-154191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 172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인 23분 54초를 제공하고 있음.
 (제2020-154192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 949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인 23분 54초를 제공하고 있음.
 (제2020-154193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 ★★★★★ ★★★★★’ 23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인 23분 25초를 제공하고 있음.

(제2020-154194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 173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인 23분 54초를 제공하고 있음.

(제2020-154195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 ★★' 19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인 21분 02초를 제공하고 있음.

(제2020-154196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 ★★★★★' 9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인 23분 25초를 제공하고 있음.

(제2020-154197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 6~10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인 각 24분 00초 내외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다만 제2020-154190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 게시물이 게시자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보여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제2020-154190호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불법복제물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큼. 다만 금

일 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재 삭제되어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불법복제물 게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삭제한 경우 시정권고 부결했던 것으로 기억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근 가능한 인원과 게시물 게시 후 삭제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파악이 가능한지?
- 오진해 전문위원: 채증자료를 보면, 2020. 11. 12. 채증되었고 블로그는 전체공개 상태임. 불법복제물 게시 날짜와 삭제날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게시기간은 알 수 없음.
- D 위원: 불법복제물 게시된 날짜와 삭제된 날짜를 문의한 이유는 게시자가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게시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인지하여 삭제한 것인지, 삭제 후 재게시의 목적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블로그의 게시판을 보면 애니메이션별 분류된 것으로 보임. 게시판을 들어가 보여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게시판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게시판별 불법복제물들이 게시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속한 게시판은 현재 삭제된 상태임.
- C 위원: 불법복제물 신고로 심의에 회부되면 심의대상 게시물만 심의 대상인지, 블로그 전체가 심의 대상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만 URL단위로 심의함. 경고의 시정권고를 할 경우 불법복제물 게시자가 경고를 받고 이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D 위원: 경고의 시정권고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 게시자에게 특별한 제재조치가 가능한지?
- 오진해 전문위원: 계정정지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근거로써 경고누적 데이터가 이용됨. 현재 포털을 대상으로는 계정정지 시정권고를 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협의 중에 있음.
- A 위원: 포털 사이트 측의 입장은 이메일 계정과 블로그 계정을 분리하여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블로그에 대한 계정정지를 하게 된다면 이메일 사용이 불가능 할 것이고, 저작권법상 계정정지에 이메일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정지 시정권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임.
- D 위원: 그렇다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더라도 어떠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 오진해 전문위원: 현재 포털 사이트와 계정정지 시정권고를 위한 협의 중이고, 계정정지가 가능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발적 삭제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불법복제물 상습 게시자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는 필요하다는 의견임.
- D 위원: 계정정지 시정권고가 이뤄지기 위한 협의를 하는 경우 불법

복제물 게시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오진해 전문위원: 반복적으로 심의에 회부되고 있는 블로그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정권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와의 계정정지 시정권고에 대한 협의 자료로 제공될 것임.
- D 위원: 본 위원회의 발언 취지는 URL단위의 게시물에 대한 경고가 아닌 불법복제 블로그 전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임.
- C 위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함. 해당 블로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
- 오진해 전문위원: 민원건에 대한 심의 외에 내부 모니터링을 통한 데드카피안전권으로서도 함께 심의에 회부되고 있음. 현재 데이터는 쌓이고 있는 것임.
- A 위원: URL단위의 게시물에 대해서만 경고의 시정권고하는 것은 다수의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블로그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위 블로그와 같은 저작물 상습 침해자에 대해 신고되지 않은 게시물들에 대해서도 보호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일괄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C 위원: 동의함. URL단위의 자료가 아닌 블로그의 저작물 상습 침해자의 반복 침해 자료를 제시하여 포털의 계정정지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우리 보호원에서 계정정지 시정권고가 이뤄지도록 이끈다면 큰 성과라고 생각함. 포털은 불법저작물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음. '★★★'의 경우 불법저작물 침해신고에 대해 우선 영상을 block할 정도로 엄격함. 이런 사정을 보아 국내 포털 또한 상습 침해에 대한 해답을 내놓도록 보호원이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 A 위원: 외국 또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앎. 상습 침해에 대해 보호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오진해 전문위원: 현재 국내 포털 '☆☆☆' 및 '▲▲▲'와 계정정지 시정권고에 대한 협의 중에 있으며, 계정정지 시정권고를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민원건에 대한 시정권고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D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은 관계 부서에 전달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feedback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음.
- B 위원: 위의 논의 사항을 전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154190호~15419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제2020-154190호 게시물은 이미 삭제된

게시물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B 위원, D 위원: 제2020-154190호 게시물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같은 생각임.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제2020-154190호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54191호~154197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을 가결함. 제2020-154190호 게시물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0-154198호는 미국 영화 ‘☆☆☆☆’의 영상물 없이 영문 자막과 우리말 자막 파일(smi)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저작권자가 신고하였음.

심의 대상 게시물은 영문과 한국어 자막을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작성자는 “☆☆☆☆☆☆ ☆☆☆☆. ▲▲▲▲ ▲▲▲▲▲▲ ▲▲▲▲ ▲▲▲▲▲▲▲▲ ▲▲▲▲▲▲▲▲. ◆◆◆◆◆◆◆◆◆◆.”라고 기재하고 있어 직접 번역 및 작성한 것으로 보임. 파일명이 ‘☆☆☆☆☆☆☆☆☆☆☆☆☆☆☆☆☆☆’인 것으로 보아 ‘◆◆◆◆◆◆◆◆’의 웹 스트리밍 영화 파일의 불법복제물과 결합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자막 파일로 보임.

영화 자막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자막 파일을 제작하고, 공정이용에 해당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를 전송하는 행위는 대본(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함.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로서는 자막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고의성 여부, 사이트의 영리적 목적 여부, 자막 제공자의 사건 외 자막 배포의 규모, 심의대상 자막파일이 교육용 등의 목적으로 별도의 판매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음. 반면, 시정권고의 소극적 요소로서는 한글 자막 제작은 원본 DVD, 블루레이 자체에서 제공한 번역 자막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닌 한, 번역자의 창작적 개성이 나타나는 독자적인 2차적 저작물이라는 점, 아직 영상물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아 한글 자막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영상물의 팬이 다른 사람들의 감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번역한 경우일 수 있다는 점, 반대로 국내 수요가 충분하여 국내 정식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 이러한 사정은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가 될 것임. 권리자측이 특별한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서 권리가 아닌 제3자 민원인이 신고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해당 안전을 보면 국내 저작권자가 신고를 했고 영화가 국내에 개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저작권자는 '☆☆☆☆☆☆☆☆☆☆'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해당 민원의 경우 '☆☆☆☆☆☆☆☆'의 대표자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임.
- D 위원: 대표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권리자신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권리자신고 또한 담당자인 직원 등의 명의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현재 민원 건 또한 권리자 신고로 받아들일 수 있음.
- A 위원: 저작권자는 '☆☆☆☆☆☆☆☆'가 아닌 미국 '☆☆☆☆☆☆☆☆'일것임.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국내 배급권을 갖는 국내 법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임.
- D 위원: 국내 법인인 '☆☆☆☆☆☆☆☆'는 배포권만 갖는지?
- A 위원: 'exclusive licensee' 인 것으로 판단됨. 미국 본사의 권리행사 대행으로 보면 될 것임.
- 오진해 전문위원: 권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신고를 하여도 시정권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권리자가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로도 고려할 수 있음.
- A 위원: 실질적으로 권리자 신고라 해야 할 것임.

- D 위원: 이전 자막관련 심의에서 다뤘던 쟁점은 언어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의한 자막번역물이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라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아 시정권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함. 하지만 이번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 이용을 촉진시킬 것임.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여주며)그러함. 해당 웹사이트는 심의에 처음으로 회부된 웹사이트임. 회원가입 없이 대부분의 게시물에 접근 가능함. 자료실을 보시면 '자막자료실', '드라마 자막', '제작자 포럼' 등 여러 게시판 존재함.
- C 위원: 전체 게시물의 숫자를 보니 상당히 많은 게시물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른 게시물도 보여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다른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며) 보시면 알 수 있듯 영상을 제외한 자막파일만을 게시하고 있음.
- A 위원: smi파일인 것으로 보아 싱크가 자동으로 맞춰지는 자막파일인 것으로 판단됨.
- D 위원: 그렇다면 동영상 파일과 결합하여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오진해 전문위원: 이번 심의대상 게시물은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것임. 특정 영상물에 대한 불법복제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로 보이고, 우리말 자막파일은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보완재 관계에 있고 영상과 결합한 후 합법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게 되는 점, 자막파일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 시키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국내 공개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영화로 국내 저작권사가 직접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54198 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해당 저작물은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영화의 자막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제2020-154198호는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B, C 위원: 이견 없음.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419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154199호~154205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출판물로, 출판사측에서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 '▲▲▲▲'에서 만

화 '☆☆☆☆☆☆☆☆', '☆☆☆ ☆☆☆', '☆☆☆☆', '☆☆☆ ☆☆☆', '☆☆☆☆☆☆ ☆☆☆☆☆', '☆☆☆ ☆☆☆☆ ☆☆☆☆ ☆☆☆☆ ☆☆☆☆ ☆☆☆☆', '☆☆☆☆ ☆☆☆☆ ☆☆☆☆☆ ☆☆☆'를 무료 내지 50 포인트에 각각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4개의 게시물임.

(제2020-154199호 심의대상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을 웹하드에서 Zip파일로 무료 내지 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2020-154200호 심의대상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은 웹하드에서 Zip파일로 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2020-154201호 심의대상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은 웹하드에서 Zip파일로 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2020-154202호 심의대상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은 웹하드에서 Zip파일로 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2020-154203호 심의대상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은 웹하드에서 Zip파일로 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2020-154204호 심의대상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은 웹하드에서 Zip파일로 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2020-154205호 심의대상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은 웹하드에서 Zip파일로 50포인트에 제공 중임.

2020-154199호~154205호의 게시물은 영리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고, 해당저작물이 합법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고려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154199~15420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4199호~15420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54206호~155432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54431호는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임. 웹사이트에서 310포인트에 판매중임. mkv파일로 제공함. 토르 세 번째 시리즈로 2017. 10.

25. 개봉하여 누적 관객 약 485만명을 기록함. 죽음의 여신 '헬라'가 아스가르드를 침략하고, 세상의 종말인 '라그나로크'의 위기에 처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토르의 이야기인 마블 판타지 영화임.

(영화 '테넷'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54785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테넷'을 무료로 제공 중임. MKV 파일로 제공함. 2020. 8. 26. 개봉하여 누적 관객 약 191만명을 기록함. 현재 상영 중임. 시간의 흐름을 뒤집는 인버전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세상을 파괴하려는 사토르를 막기위해 닐과 사토르의 아내가 협력해 미래 제3차 세계대전에 맞서는 SF첩보 영화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54206호~15543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B, C, D 위원: 안건번호 제2020-154206호~155432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54206호~155432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54190호~15543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30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0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1. 26.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김연희